



신라대학교
ESG경영연구소



ESG & ISO인증원(주)

협약서

신라대학교 ESG경영연구소와 ESG&ISO인증원은 ESG시민운동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자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신라대학교 ESG경영연구소와 ESG&ISO인증원은 ESG시민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ESG분야별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 연구, 산학 역량강화, 자유가치 확산 등 양 기관의 공동번영, 상호지원 및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신라대학교 ESG경영연구소와 ESG&ISO인증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 이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1. ESG관련 정보교환 (ESG관련 정보·자료·전문지식, 국내·외 ESG동향, ESG실천 방안 등)과 자유가치 확산
2. 인적교류 (ESG관련 자문, ESG관련 프로그램 개발, ESG관련 재직자 교육, ESG.ISO 관련 전문가 양성, 워크숍 및 ESG경영학과 석사과정(계약학과)운영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교류)
3. ESG시민운동을 시민이 이해하고 실천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ESG시민운동 활성화 및 ESG 확산 활동
4. ESG경영을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 등의 우수사례 공유 및 성과 확산 활동
5. 기타 ESG관련 활동과 자유가치 확산에 상호 협력

제3조(효력 및 협력기간) 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유효하며, 협약의 일방 당사자가 해지를 요청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협약의 일방 당사자가 본 협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비밀의 유지) 협약기관은 협약 업무 수행 중 습득한 정보를 본 협약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본 협약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협력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5년 12월 15일

신라대학교ESG경영연구소

소 장 김 성 군

ESG & ISO인증원(주)

대표이사 주 청 돈



사단법인
ESG시민운동본부



ITS 인증원
International Technology Standard

협약서

사단법인 ESG시민운동본부와 ITS인증원은 ESG시민운동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자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사단법인 ESG시민운동본부와 ITS인증원은 ESG시민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ESG분야별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 연구, 산학 역량강화, 자유가치 확산 등 양 기관의 공동번영, 상호지원 및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사단법인 ESG시민운동본부와 ITS인증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 이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1. ESG관련 정보교환 (ESG관련 정보·자료·전문지식, 국내·외 ESG동향, ESG실천 방안 등)과 자유가치 확산
2. 인적교류 (ESG관련 자문, ESG관련 프로그램 개발, ESG관련 재직자 교육, ESG,ISO관련 전문가 양성, 워크숍 및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교류)
3. ESG시민운동을 시민이 이해하고 실천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ESG시민운동 활성화 및 ESG 확산 활동
4. ESG경영을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 등의 우수사례 공유 및 성과 확산 활동
5. 기타 ESG관련 활동과 자유가치 확산에 상호 협력

제3조(효력 및 협력기간) 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유효하며, 협약의 일방 당사자가 해지를 요청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협약의 일방 당사자가 본 협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비밀의 유지) 협약기관은 협약 업무 수행 중 습득한 정보를 본 협약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본 협약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협력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 1부 씩 보관한다.

2025년 12월 15일

(사)ESG시민운동본부

이사장 김 성 근

(주)아이티에스인증원

원장 박 준 영